

2023년 제11차 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23. 12. 29.(금) 17:00
- 장소 : T&S빌딩 5층, 필다헌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2023년 제11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소집 통보일 : 2023. 12. 20.	
이사 정수 : 8인	재적이사 : 8인
감사 정수 : 2인	재적감사 : 2인

1. 일시 : 2023년 12월 29일(금) 17:00~19:20

2. 장소 : T&S빌딩 5층, 필다현(서울 중구 서애로 33)

3. 임원 참석 현황

- 참석 이사 : 김종철, 김동건, 김호정, 박정운, 문휘창, 이돈구, 최맹호
- 불참 이사 : 양인집
- 참석 감사 : 윤규섭, 배한영
- 불참 감사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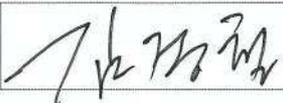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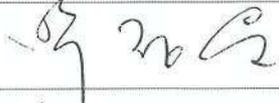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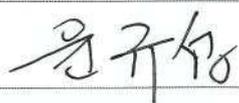
4. 안건

가. 심의안건

- (1)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2) 한국외국어대학교 보수규정 개정(안)
- (3)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4)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규정 개정(안)
- (5)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예금) 처분(안)
- (6) 한국외국어대학교 기채 승인(안)
- (7)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캠퍼스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서 변경 제출(안)
- (8)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상자 선임(안)

나. 보고사항

- (1) 송도캠퍼스추진단 구성 및 운영 보고

간인(서명)			
--------	---	--	---

5. 성원보고 및 개최선언

- 김종철 의장(이사장)이 성원 보고를 요청하다.
- 이어 이태욱 법인사무처장이 재적이사 8인 중 7인 참석으로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원 되었음을 보고하다.
- 이어 김종철 의장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2023년 제11차 이사회 개최를 선언하다.

6. 전회 이사회 회의록 승인

- 김종철 의장이 전회 회의록 보고를 요청하자, 이태욱 법인사무처장이 보고한 후의 의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전회 회의록을 승인하다.

7. 회의내용

가. 심의안건

(1)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김종철 의장 : 제1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 요청함
- 윤성우 교무처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2024학년도 제1학기 교원 임용사항으로 내국인 신규임용 15명, 외국인 신규임용 10명, 내국인 정년트랙 재임용 13명, 특성화트랙 5명 재임용, 외국인 49명 재임용, 내국인 승진 7명, 외국인 승진 4명, 고속승진 2명, 휴직 1명, 내국인 해임 12명, 외국인 해임 9명, 석좌교수 재임용 3명 대한 임용사항을 보고함. 아울러, 경제학부 신규 임용 후보자의 경우, 현재 캐나다 소재 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인데 2024.1.8.부터 학기가 시작되어 중도 사직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신규임용일을 2024.03.01.자에서 2024.09.01.자로 변경 승인을 요청함.
- 최맹호 이사(인사위원장) : 인사위원회 검토 결과, 학교 제청 원안을 모두 승인하였으며,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보고함.
 - “경영학부”의 경우 1순위자가 지원 포기 의사를 표명하여 2순위자를 제청하였고, 2순위자도 학자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

간인(서명)	김종철	이태욱	윤성우
--------	-----	-----	-----

단되어 임용 승인함.

- 임용 제청자 중 “Language & AI융합학부” 소속 2명은 2024년 2월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학문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인재로 판단되나, 교육경력이 부족하여 교육자로서의 자질, 강의능력, 연구실적 등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임용 후 학교에서 깊이 있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 있음.
- “철학과, AI데이터융합학부 공동채용”, “생명공학과”, “컴퓨터공학부” 등은 1순위자 임용을 승인하되, 1순위자가 지원을 자진 철회하는 경우 2순위자 임용을 승인함.
- “통번역대학(원)” 소속 교원의 경우 통·번역 용역이 연구실적 부분에도 반영되는 이중혜택 수혜자라는 의견.
- 특성화트랙 강의중심교원의 경우, 강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상황에서도 재임용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의 불합리한 부분 지적.
- 학과별 재임용 의견서 기술 내용 중 일부 학과는 지극히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재임용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앞으로는 학과발전 기여도, 강의 능력, 학문 업적, 교수 자질 등 재임용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안내 바람.
- 외국인 교원의 신분보장이 엄격해지는 추세이므로 정량 및 정성평가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여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학교 재량권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업무에 만전을 다하기 바람.
- 고속승진, 조기정년보장 등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제도이므로 논문의 계량적 수치 이외에 피인용지수, 학문적 우월성, 교수 자질 등 정성적 평가도 반영할 필요 있음. 요건만 충족되면 고속승진되는 형식성 재검토 필요 의견.
- SCI급 저널인 경우라도 질적 수준이 높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저널이 다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및 대책 필요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1호 안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원안에서 경제학부 신규임

간인(서명)	김종철	김민준	유기성
--------	-----	-----	-----

용 대상자의 임용일을 수정하여 승인·의결하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사항

1. 승인 여부 : 수정 의결(붙임, 승인 명단 참조)
2. 수정사항 : 경제학부 신규임용 대상자의 임용일을 2024.09.01.자로 변경.
3. 승인 부가 조건 : “철학과, AI데이터융합학부 공동채용”, “생명공학과”, “컴퓨터공학부” 등은 1순위자 임용을 승인하되, 1순위자가 지원을 자진 철회하는 경우 2순위자 임용을 승인함.

* 붙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2) 한국외국어대학교 보수규정 개정(안)

- 김종철 의장 : 제2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하다.
- 윤성우 교무처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를 _____으로 인상하고, 처장단의 유류비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교통보조수당으로 _____을 지급하고자 하며, 원어강의 인센티브에 대하여 학점당 _____을 반영하고자 함.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결과, 원어강의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은 원어강의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영어강의를 지칭하는지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모호하므로, 개정안 원안에서 <별표 5-1> 원어강의 인센티브 부분을 제외하고 승인하도록 합의함.
- 김종철 의장 : 제2호 안건의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붙임과 같이 원안을 수정하여 승인·의결하다.

□ 보수규정 개정 승인사항

- 승인여부 : 수정 의결
- 수정사항 : 원안에서 <별표 5-1> 원어강의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승인함.
- 시 행 일 : 2023년 12월 29일부터 개정하고,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붙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보수규정 신·구 대비표

간인(서명)	김종철	윤성우	윤규성
--------	-----	-----	-----

(3)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김종철 의장 : 제3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 요청함.
- 정현혁 교학처장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2024학년도 제1학기 교원 임용사항으로 내국인 특성화트랙 신규임용 2명, 내국인 재임용 1명, 외국인 재임용 5명, 해임 1명의 임용사항을 보고함.
- 최맹호 이사(인사위원장) : 인사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학교 제청 원안을 모두 승인하였고, 외국인 교원 재임용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정량·정성적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학교 당국에 권고하였음.
- 김종철 의장 : 제3호 안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의결사항

- 승인 여부 : 원안 의결(불임, 승인 명단 참조)

* 불임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4)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규정 개정(안)

- 김종철 의장 : 제4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하다.
- 최맹호 이사(인사위원장) : 사이버한국외대는 당초 교원인사규정 등 3건의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인사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교원승진·승급및재임용규정 개정(안)의 경우 “고속승진 운영안”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하도록 학교측에 요구하였고, 이를 학교측에서 수용하여 금번 이사회는 2건의 규정 개정(안)이 제출되었음.
- 정현혁 교학처장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개정(안),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등 2건의 규정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함.

(가)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 주요내용 :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직무 등에 대한 개정

(나)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간인(서명)	김종철	최맹호	정현혁
--------	-----	-----	-----

- 주요내용 :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재임용 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변경, 교육·학생지도중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중 교육역량 평가기준에서 강의평가결과를 심사 직전 3개 학기 평가로 변경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4호 안건의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7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각각 승인·의결하다.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규정 개정 및 폐지 승인사항

(가)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 승인여부 : 원안 승인
- 시 행 일 : 2023년 12월 29일

(나)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 승인여부 : 원안 승인
- 시 행 일 : 2023년 12월 29일

붙임 : 교원인사규정 신·구 대비표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신·구 대비표

(5)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처분(안)

- 김종철 의장 : 제5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이태욱 법인사무처장 :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한국외국어대학교 신설학과 투자 명목으로 전출금 예산액을 본예산 대비 10억원 증액하여 편성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전출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등재된 정기예금 중 10억원을 처분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법정부담금으로 전출하고자 함.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5호 안건의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붙임과 같이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붙임 : 수익용기본재산(예금) 처분 승인사항

(6) 한국외국어대학교 기채 승인(안)

- 김종철 의장 : 제6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김광호 기획조정처장 : 인천시 연수구청의 송도토지 3개년도분(2020~2022년)

간인(서명)	김종철	이태욱	윤규성
--------	-----	-----	-----

재산세 과세 예고(과세 예정일 : 2024년 1월)에 대한 세금 납부를 위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13억6천만원을 1년 거치, 4년 상환, 연6.2%(변동금리)로 차입코자 하며, 교비회계로 상환할 계획임. 이사회 승인 후 관할청 기채 허가 승인 신청 및 해당 사항을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송도부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하여 과세 관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학교측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등 세금 절감 노력을 당부함.
- 김종철 의장 : 제6호 안건의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기채 승인 내역

1. 기채처 : 우리은행
2. 기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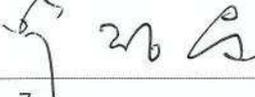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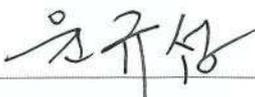
(단위 : 원)

연도별 송도토지 재산세	금 액	기채기간	금리 ¹⁾	상환 회계	비고
2020	422,731,530	1년 거치 4년 상환	연 6.2% (변동금리)	교비회계 (담보제공 없음)	
2021	453,729,530				
2022	486,550,930				
소 계	1,363,011,990				
기채신청금액	1,360,000,000				

¹⁾2023년 11/29 기준 우리은행 이자율 기준이며 기채 청구 시점 금리 적용 예정

(7)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캠퍼스 위치변경계획 신청서 변경 제출(안)

- 김종철 의장 : 제7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 요청함.
- 김광호 기획조정처장 : 교육부의 위치변경계획 보완요청 이후 대학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교사건축 규모를 조정하였고, 그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을 구체화하여 계획서를 변경 제출하고자 함. 다만, 위치변경계획서 중 소요경비 조달계획을 확정하지 못했음을 보고함.
- 이어 임원들이 다음과 같이 토의함.
 - 학교법인의 지원 등 학교측의 건설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요청.
 - 송도캠퍼스 개발을 통해 외국인유학생 유치, 산학협력 등 다양한 수익방

간인(서명)			
--------	---	--	---

안을 모색해 학교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임.

- 학교 재정은 학교법인에서 최종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학교법인은 학교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음.
- 학교법인과 학교측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금번 이사회는 심의를 유보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도록 제안함.

- 이어 김종철 의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심의안건 제7호는 송도 캠퍼스 개발의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금번 이사회는 심의를 유보하고, 동 안건의 재논의를 위한 이사회를 1월 16일 07:30에 개최하기로 참석이사 7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다.

(8)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상자 선임(안)

- 김종철 의장이 심의안건 제8호를 상정하고, 이사회 회의록 서명의 간소화를 위해 간서명 대상자로 김종철 이사장, 박정운 이사, 윤규섭 감사를 선임하겠음을 발의하자, 참석이사 7인 전원 찬성으로 승인·의결하다.

나. 보고사항

(1) 송도캠퍼스추진단 구성 및 운영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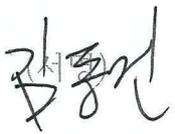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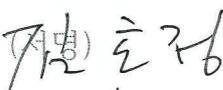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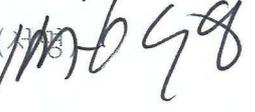
- 김종철 의장 : 보고사항 제1호를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이돈구 이사(송도캠퍼스추진단장) : 2023년 제10차 이사회 의결사항 후속 조치로써,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캠퍼스 개발을 원활히 추진 및 지원하고, 송도캠퍼스가 독자적으로 자립·운영될 수 있도록 수익사업 등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위원 8인, 간사 1인으로 송도캠퍼스추진단 구성을 완료하였음. 아울러 2023.12.07.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위치 변경계획서에 따른 설치학과, 교사규모 등은 학교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2024년분 송도 세금부과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2024.06.01. 이전에 건물 착공 등 건축행위가 요구되는 바, 학교측에 교사 건축을 위한 설계,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착수하도록 요청하였음을 보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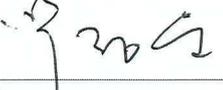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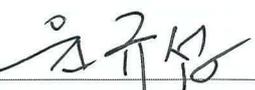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운 윤규섭

○ 이어 김종철 의장이 2023년 제11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2023년 12월 29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김종철	
	이사	김동건	
	이사	김호정	
	이사	문휘창	
	이사	박정운	
	이사	양인집	(불참)
	이사	이돈구	
	이사	최맹호	
	감사	배한영	
	감사	윤규섭	

간인(서명)			
--------	---	--	---

(붙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1. 신규임용

가. 내국인교원

※ 철학과(AI데이터융합학부 공동채용), 생명공학과, 컴퓨터공학부는 1순위자 임용을 승인하되, 1순위자가 지원을 자진 철회하는 경우 2순위자 임용함.

간인(서명)	김정철	이은	유규성
--------	-----	----	-----

나. 외국인교원

간인(서명)	김정철	이민	이규삼
--------	-----	----	-----

2. 재임용

가. 정년트랙(내국인교원)

나. 특성화트랙(내국인교원)

간인(서명)	김정철	이민호	윤규상
--------	-----	-----	-----

다. 외국인교원

간인(서명)	김정희	김민서	이규성
--------	-----	-----	-----

간인(서명)

김정현

김민준

유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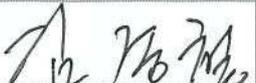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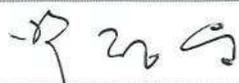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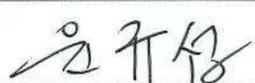
3. 승진임용

가. 내국인교원

나. 외국인교원

4. 고속승진

5. 휴직

간인(서명)			
--------	---	--	---

6. 해임

가. 내국인교원

나. 외국인교원

간인(서명)	김정림	이민서	원기성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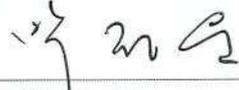
7. 석좌교수 재임용

간인(서명)	김정필	박민서	윤규성
--------	-----	-----	-----

(붙임)

한국의국어대학교 보수규정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 4 조 (봉급) 교직원의 봉급은 그 자격과 경력에 따라 사정된 호급의 본봉액과 연구보조비로 한다. 단, 2010년 7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직원의 봉급은 직원 봉급지급표(별표2)를 적용하지 않으며 본봉 및 상여금, 급량비 및 제수당이 포함된 성과급제로 하되 별도의 성과급제 직원 보수규정에 의한다. 1. 전임교원 봉급지급표(별표 1) 2. ~ 4. (생략)	제 4 조 (봉급) 교직원의 봉급은 그 자격과 경력에 따라 사정된 호급의 본봉액과 연구보조비로 한다. 단, 2010년 7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직원의 봉급은 직원 봉급지급표(별표2)를 적용하지 않으며 본봉 및 상여금, 급량비 및 제수당이 포함된 성과급제로 하되 별도의 성과급제 직원 보수규정에 의한다. 1. 전임교원 봉급지급표(별표 1) 2. ~ 4. (현행과 같음)	별표1 수정								
제11조 (제수당) 총장은 교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수당을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제11조 (제수당) 총장은 교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수당을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7. 교통보조수당 <별표 12> 8. (현행과 같음)	교통보조 수당 신설 번호 순연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제4조 1호(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봉급 인상) 및 제11조 7호(교통보조수당 신설)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1) 정년트랙 (생략) 특성화트랙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봉급</td> </tr> <tr> <td>특성화트랙</td> <td></td> </tr> </table>	구분	봉급	특성화트랙		(별표 1) 정년트랙 (현행과 같음) 특성화트랙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봉급</td> </tr> <tr> <td>특성화트랙</td> <td></td> </tr> </table>	구분	봉급	특성화트랙		별표 1 수정
구분	봉급									
특성화트랙										
구분	봉급									
특성화트랙										
(신설)	<별표 12> 교통보조수당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보직명</th> <th>금액</th> </tr> <tr> <td>부총장(서울.글로벌), 재무.대외 부총장, 산학연계부총장, 미래위원회 위원장, 교무처장 (서울.글로벌), 학생.인재개발처 장(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서울. 글로벌), 행정지원처장(서울. 글로벌), 입학처장, 기획조정처 장, 국제교류처장, 대외협력처 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정보지 원처장, 대학원 교학처장, 사 업지원처장, 홍보실장, 교육혁 신원장</td> <td></td> </tr> </table> * 겸직 시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음 * 학교 차량을 지원받는 경우 교통보조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보직명	금액	부총장(서울.글로벌), 재무.대외 부총장, 산학연계부총장, 미래위원회 위원장, 교무처장 (서울.글로벌), 학생.인재개발처 장(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서울. 글로벌), 행정지원처장(서울. 글로벌), 입학처장, 기획조정처 장, 국제교류처장, 대외협력처 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정보지 원처장, 대학원 교학처장, 사 업지원처장, 홍보실장, 교육혁 신원장		별표 12 신설				
보직명	금액									
부총장(서울.글로벌), 재무.대외 부총장, 산학연계부총장, 미래위원회 위원장, 교무처장 (서울.글로벌), 학생.인재개발처 장(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서울. 글로벌), 행정지원처장(서울. 글로벌), 입학처장, 기획조정처 장, 국제교류처장, 대외협력처 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정보지 원처장, 대학원 교학처장, 사 업지원처장, 홍보실장, 교육혁 신원장										

간인(서명)			
--------	---	--	---

(붙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1. 신규임용(내국인)

2. 재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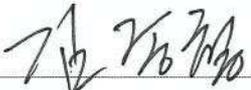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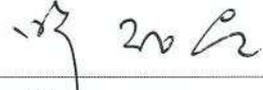
3. 해임(외국인)

간인(서명)	김명준	이민준	유규성
--------	-----	-----	-----

(붙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신·구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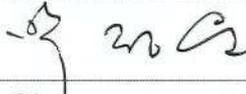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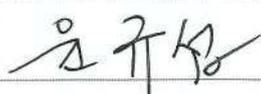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비고
<p>제6조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위원회는 <u>학장과 교학처장, 그리고 총장이 지명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인</u>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단, <u>학장과 교학처장의 유고시</u>에는 총장이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지명한다.</p> <p>② (생략)</p>	<p>제6조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위원회는 <u>교학처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4인</u>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단, <u>교학처장의 유고시</u>에는 총장이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지명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자구 수정
<p>제7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① (생략)</p> <p>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u>학장</u>이 되며, 회무를 주관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단, <u>학장의 유고시 교학처장이 대행한다. 교학처장이 직무대행 중 유고시</u>에는 <u>총장이 위원장을 지정한다.</u></p> <p>③~④ (생략)</p>	<p>제7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u>교학처장</u>이 되며, 회무를 주관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단, <u>교학처장의 유고시</u>에는 <u>총장이 위원장을 지정한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자구 수정
(14) (신설)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4)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p>	부칙 신설

간인(서명)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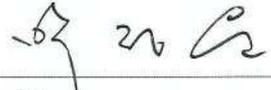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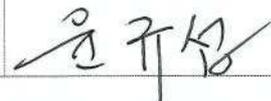
(붙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신·구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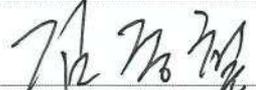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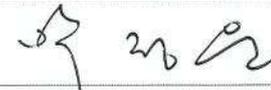
현행	개정	비고																								
제4조 (계약기간 및 재임용) ①~③ (생략) ④ 재임용 시 계약기간은 매 <u>1년</u> 으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계약기간 및 재임용)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재임용 시 계약기간은 매 <u>2년</u> 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6) (신설) (7) (신설)	부칙 (6)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경과조치) 2023학년도 2학기 현재 재직 중인 특성화트랙 교육·학생지도중점교수는 1회 재임용 심 사 실시 후 개정사항을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2> 교육·학생지도중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2020.8.31.이전 임용자) (표 생략) <input type="checkbox"/> 교육·학생지도중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2020.9.1. 이후 임용자)	<별표 2> 교육·학생지도중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2020.8.31.이전 임용자) (현행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교육·학생지도중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2020.9.1. 이후 임용자)	자구 수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교육·학생지도중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재임용 소요기간</td> <td><u>매1년 단위 갱신 (최초 임용 시 2년)</u></td> </tr> <tr> <td>연구점수</td> <td>연 240 × 계약기간</td> </tr> <tr> <td>필수 사항</td> <td>▶ 연평균 국제저명 학술지 또는 국내저명 학 술지 게재점수 200점 이상 ▶ 연평균 교육용콘텐츠 개발 점수 50점 이상 ▶ 계약기간 중 cufs 우수강의상 수상</td> </tr> <tr> <td>교육역량</td> <td>교육역량 평가점수 80점 이상 (교육역량 평가기준은 <별표 7>과 같음)</td> </tr> <tr> <td>학부발전 기여도</td> <td>학부발전 기여도 평가 점수 80점 이상 (학부발전 기여도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음)</td> </tr> </tbody> </table> <p>※ 특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연구는 인정비율을 적용하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0% 추가 가산한다. 단, 논문에 제1저자와 교신저자로 명시되어 있는 건에 한하여 인정한다. 필수사항 중 cufs 우수강의상 수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부(과) 발전 기여도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학부(과)장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용제청할 수 있다. 	구분	교육·학생지도중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재임용 소요기간	<u>매1년 단위 갱신 (최초 임용 시 2년)</u>	연구점수	연 240 × 계약기간	필수 사항	▶ 연평균 국제저명 학술지 또는 국내저명 학 술지 게재점수 200점 이상 ▶ 연평균 교육용콘텐츠 개발 점수 50점 이상 ▶ 계약기간 중 cufs 우수강의상 수상	교육역량	교육역량 평가점수 80점 이상 (교육역량 평가기준은 <별표 7>과 같음)	학부발전 기여도	학부발전 기여도 평가 점수 80점 이상 (학부발전 기여도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교육·학생지도중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재임용 소요기간</td> <td><u>2년</u></td> </tr> <tr> <td>연구점수</td> <td>연 240 × 계약기간</td> </tr> <tr> <td>필수 사항</td> <td>▶ 연평균 국제저명 학술지 또는 국내저명 학 술지 게재점수 200점 이상 ▶ 연평균 교육용콘텐츠 개발 점수 50점 이상 ▶ 계약기간 중 cufs 우수강의상 수상</td> </tr> <tr> <td>교육역량</td> <td>교육역량 평가점수 80점 이상 (교육역량 평가기준은 <별표 7>과 같음)</td> </tr> <tr> <td>학부발전 기여도</td> <td>학부발전 기여도 평가 점수 80점 이상 (학부발전 기여도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음)</td> </tr> </tbody> </table> <p>※ 특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연구는 인정비율을 적용하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0% 추가 가산한다. 단, 논문에 제1저자와 교신저자로 명시되어 있는 건에 한하여 인정한다. 필수사항 중 cufs 우수강의상 수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부(과) 발전 기여도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학부(과)장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용제청할 수 있다. 	구분	교육·학생지도중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재임용 소요기간	<u>2년</u>	연구점수	연 240 × 계약기간	필수 사항	▶ 연평균 국제저명 학술지 또는 국내저명 학 술지 게재점수 200점 이상 ▶ 연평균 교육용콘텐츠 개발 점수 50점 이상 ▶ 계약기간 중 cufs 우수강의상 수상	교육역량	교육역량 평가점수 80점 이상 (교육역량 평가기준은 <별표 7>과 같음)	학부발전 기여도	학부발전 기여도 평가 점수 80점 이상 (학부발전 기여도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음)	자구 수정
구분	교육·학생지도중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재임용 소요기간	<u>매1년 단위 갱신 (최초 임용 시 2년)</u>																									
연구점수	연 240 × 계약기간																									
필수 사항	▶ 연평균 국제저명 학술지 또는 국내저명 학 술지 게재점수 200점 이상 ▶ 연평균 교육용콘텐츠 개발 점수 50점 이상 ▶ 계약기간 중 cufs 우수강의상 수상																									
교육역량	교육역량 평가점수 80점 이상 (교육역량 평가기준은 <별표 7>과 같음)																									
학부발전 기여도	학부발전 기여도 평가 점수 80점 이상 (학부발전 기여도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음)																									
구분	교육·학생지도중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재임용 소요기간	<u>2년</u>																									
연구점수	연 240 × 계약기간																									
필수 사항	▶ 연평균 국제저명 학술지 또는 국내저명 학 술지 게재점수 200점 이상 ▶ 연평균 교육용콘텐츠 개발 점수 50점 이상 ▶ 계약기간 중 cufs 우수강의상 수상																									
교육역량	교육역량 평가점수 80점 이상 (교육역량 평가기준은 <별표 7>과 같음)																									
학부발전 기여도	학부발전 기여도 평가 점수 80점 이상 (학부발전 기여도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음)																									

간인(서명)			
--------	---	--	---

현 행	개 정	비고																												
<p><별표 4> 대외협력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p>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대외협력중점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th> </tr> <tr> <td>재임용 소요기간</td> <td><u>매1년 단위 갱신 (최초 임용 시 2년)</u></td> </tr> <tr> <td>연구점수</td> <td>연 150 × 계약기간</td> </tr> <tr> <td>필수 사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국제저명 학술지 또는 국내저명 학술지 게재점수 120점 이상 ▶ 계약기간 중 cufs 우수강의상 수상 </td> </tr> <tr> <td>학부(과) 발전 기여도</td> <td>학부(과) 발전 기여도 평가 점수 80점 이상 (학부발전 기여도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음)</td> </tr> <tr> <td>산학협력 업적</td> <td>산학협력 업적 평가점수 80점 이상 (산학협력 업적 평가기준은 <별표 6>과 같음)</td> </tr> <tr> <td colspan="2"> ※ 특기사항 ◦ 공동연구는 인정비율을 적용하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0% 추가 가산한다. 단, 논문에 제1저자와 교신저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필수사항 중 cufs 우수강의상 수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부(과) 발전 기여도 점수와 산학협력 업적 평가 점수가 평균 90점 이상이면 학부(과)장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용제청할 수 있다. </td> </tr> </table>	구 분	대외협력중점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재임용 소요기간	<u>매1년 단위 갱신 (최초 임용 시 2년)</u>	연구점수	연 150 × 계약기간	필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국제저명 학술지 또는 국내저명 학술지 게재점수 120점 이상 ▶ 계약기간 중 cufs 우수강의상 수상 	학부(과) 발전 기여도	학부(과) 발전 기여도 평가 점수 80점 이상 (학부발전 기여도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음)	산학협력 업적	산학협력 업적 평가점수 80점 이상 (산학협력 업적 평가기준은 <별표 6>과 같음)	※ 특기사항 ◦ 공동연구는 인정비율을 적용하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0% 추가 가산한다. 단, 논문에 제1저자와 교신저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필수사항 중 cufs 우수강의상 수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부(과) 발전 기여도 점수와 산학협력 업적 평가 점수가 평균 90점 이상이면 학부(과)장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용제청할 수 있다.		<p><별표 4> 대외협력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p>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대외협력중점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th> </tr> <tr> <td>재임용 소요기간</td> <td><u>2년</u></td> </tr> <tr> <td>연구점수</td> <td>연 150 × 계약기간</td> </tr> <tr> <td>필수 사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국제저명 학술지 또는 국내저명 학술지 게재점수 120점 이상 ▶ 계약기간 중 cufs 우수강의상 수상 </td> </tr> <tr> <td>학부(과) 발전 기여도</td> <td>학부(과) 발전 기여도 평가 점수 80점 이상 (학부발전 기여도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음)</td> </tr> <tr> <td>산학협력 업적</td> <td>산학협력 업적 평가점수 80점 이상 (산학협력 업적 평가기준은 <별표 6>과 같음)</td> </tr> <tr> <td colspan="2"> ※ 특기사항 ◦ 공동연구는 인정비율을 적용하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0% 추가 가산한다. 단, 논문에 제1저자와 교신저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필수사항 중 cufs 우수강의상 수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부(과) 발전 기여도 점수와 산학협력 업적 평가 점수가 평균 90점 이상이면 학부(과)장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용제청할 수 있다. </td> </tr> </table>	구 분	대외협력중점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재임용 소요기간	<u>2년</u>	연구점수	연 150 × 계약기간	필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국제저명 학술지 또는 국내저명 학술지 게재점수 120점 이상 ▶ 계약기간 중 cufs 우수강의상 수상 	학부(과) 발전 기여도	학부(과) 발전 기여도 평가 점수 80점 이상 (학부발전 기여도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음)	산학협력 업적	산학협력 업적 평가점수 80점 이상 (산학협력 업적 평가기준은 <별표 6>과 같음)	※ 특기사항 ◦ 공동연구는 인정비율을 적용하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0% 추가 가산한다. 단, 논문에 제1저자와 교신저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필수사항 중 cufs 우수강의상 수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부(과) 발전 기여도 점수와 산학협력 업적 평가 점수가 평균 90점 이상이면 학부(과)장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용제청할 수 있다.		자구 수정
구 분	대외협력중점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재임용 소요기간	<u>매1년 단위 갱신 (최초 임용 시 2년)</u>																													
연구점수	연 150 × 계약기간																													
필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국제저명 학술지 또는 국내저명 학술지 게재점수 120점 이상 ▶ 계약기간 중 cufs 우수강의상 수상 																													
학부(과) 발전 기여도	학부(과) 발전 기여도 평가 점수 80점 이상 (학부발전 기여도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음)																													
산학협력 업적	산학협력 업적 평가점수 80점 이상 (산학협력 업적 평가기준은 <별표 6>과 같음)																													
※ 특기사항 ◦ 공동연구는 인정비율을 적용하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0% 추가 가산한다. 단, 논문에 제1저자와 교신저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필수사항 중 cufs 우수강의상 수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부(과) 발전 기여도 점수와 산학협력 업적 평가 점수가 평균 90점 이상이면 학부(과)장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용제청할 수 있다.																														
구 분	대외협력중점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재임용 소요기간	<u>2년</u>																													
연구점수	연 150 × 계약기간																													
필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국제저명 학술지 또는 국내저명 학술지 게재점수 120점 이상 ▶ 계약기간 중 cufs 우수강의상 수상 																													
학부(과) 발전 기여도	학부(과) 발전 기여도 평가 점수 80점 이상 (학부발전 기여도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음)																													
산학협력 업적	산학협력 업적 평가점수 80점 이상 (산학협력 업적 평가기준은 <별표 6>과 같음)																													
※ 특기사항 ◦ 공동연구는 인정비율을 적용하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0% 추가 가산한다. 단, 논문에 제1저자와 교신저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필수사항 중 cufs 우수강의상 수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부(과) 발전 기여도 점수와 산학협력 업적 평가 점수가 평균 90점 이상이면 학부(과)장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용제청할 수 있다.																														
<p><별표 7> 교육역량 평가기준</p> <table border="1"> <tr> <th>평가항목</th> <th>평가기준</th> </tr> <tr> <td>교육역량</td> <td>100점 만점(기본점수)에서 감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td> </tr> <tr> <td rowspan="2">감점 항목</td> <td> 강의평가 결과 최초 재임용은 심사학기 직전 3개 학기, 이후 재임용은 심사학기 직전 2개 학기에 운영한 교과목 중 강의평가 결과가 상위 70% 이하인 과목은 과목당 5점을 감점한다. </td> </tr> <tr> <td> 수업운영 충실성 수업계획서 입력, 시험출제 및 검수, 최종 성적입력 지정기간 내 미완료 시: 1일 지체 시 기본점수에서 1점을 감점한다. </td> </tr> </table> <p><input type="checkbox"/> (신설)</p>	평가항목	평가기준	교육역량	100점 만점(기본점수)에서 감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 항목	강의평가 결과 최초 재임용은 심사학기 직전 3개 학기, 이후 재임용은 심사학기 직전 2개 학기에 운영한 교과목 중 강의평가 결과가 상위 70% 이하인 과목은 과목당 5점을 감점한다.	수업운영 충실성 수업계획서 입력, 시험출제 및 검수, 최종 성적입력 지정기간 내 미완료 시: 1일 지체 시 기본점수에서 1점을 감점한다.	<p><별표 7> 교육역량 평가기준 (2024.2.29. 까지) (현행과 같음)</p> <p><input type="checkbox"/> 교육역량 평가기준 (2024.3.1. 이후)</p> <table border="1"> <tr> <th>평가항목</th> <th>평가기준</th> </tr> </table>	평가항목	평가기준	자구 수정 별표 신설																			
평가항목	평가기준																													
교육역량	100점 만점(기본점수)에서 감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 항목	강의평가 결과 최초 재임용은 심사학기 직전 3개 학기, 이후 재임용은 심사학기 직전 2개 학기에 운영한 교과목 중 강의평가 결과가 상위 70% 이하인 과목은 과목당 5점을 감점한다.																													
	수업운영 충실성 수업계획서 입력, 시험출제 및 검수, 최종 성적입력 지정기간 내 미완료 시: 1일 지체 시 기본점수에서 1점을 감점한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간인(서명)			
--------	---	--	---

현행	개정	비고						
	<table border="1"> <tr> <td data-bbox="766 313 909 380">교육역량</td> <td data-bbox="909 313 1324 380">100점 만점(기본점수)에서 감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td> </tr> <tr> <td data-bbox="766 380 829 492">감점항목</td> <td data-bbox="829 380 1324 492">강의평가 결과 심사학기 직전 3개 학기에 운영한 교과목 중 강의평가 결과가 상위 70% 이하인 과목은 과목당 5점을 감점한다.</td> </tr> <tr> <td data-bbox="766 492 909 604">수업운영 충실성</td> <td data-bbox="909 492 1324 604">수업계획서 입력, 시험출제 및 검수, 최종 성적입력 지정기간 내 미완료 시: 1일 지체 시 기본점수에서 1점을 감점한다.</td> </tr> </table>	교육역량	100점 만점(기본점수)에서 감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항목	강의평가 결과 심사학기 직전 3개 학기에 운영한 교과목 중 강의평가 결과가 상위 70% 이하인 과목은 과목당 5점을 감점한다.	수업운영 충실성	수업계획서 입력, 시험출제 및 검수, 최종 성적입력 지정기간 내 미완료 시: 1일 지체 시 기본점수에서 1점을 감점한다.	
교육역량	100점 만점(기본점수)에서 감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항목	강의평가 결과 심사학기 직전 3개 학기에 운영한 교과목 중 강의평가 결과가 상위 70% 이하인 과목은 과목당 5점을 감점한다.							
수업운영 충실성	수업계획서 입력, 시험출제 및 검수, 최종 성적입력 지정기간 내 미완료 시: 1일 지체 시 기본점수에서 1점을 감점한다.							

간인(서명)			
--------	---	--	---

(붙임)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수익용기본재산(예금) 처분 승인사항

1. 처분대상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정기예금 중 1,000,000,000원을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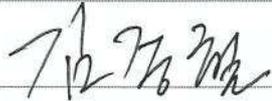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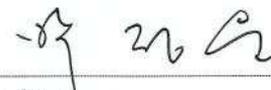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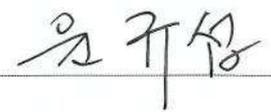
(금액단위 : 원)

구분	계좌번호	보유금액 (원금기준)	처분액	처분후 잔액	비고
정기예금 (우리은행)		967,751,773	967,751,773	0	
정기예금 (우리은행)		63,198,227	32,248,227	30,950,000	
합계		1,030,950,000	1,000,000,000	30,950,000	

2. 처분용도 :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정부담금으로 10억원 전액 전출함.

3. 처분일 : 교육부 승인 후 즉시 처분.

4. 처분사유 : 학교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재무 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을 처분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정부담금으로 전출하고자 함.

간인(서명)			
--------	---	--	---